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80
------------	-------

발의연월일 : 2018. 5. 2.

발 의 자 : 임이자 · 홍문종 · 윤종필  
장석춘 · 문진국 · 함진규  
원유철 · 한정애 · 안상수  
송희경 의원(10인)

### 제안이유

임금피크제의 확산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

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i)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 ③</p> <p>(생 략)</p> <p><u>&lt;신 설&gt;</u></p>	<p>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 ③</p> <p>(현행과 같음)</p> <p><u>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 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u></p> <p><u>2.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u></p>

제48조(과태료) <신 설>

① ~ ③ (생 략)

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  
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  
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  
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  
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

제48조(과태료) ①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와 같음)